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우 150-97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408호/전화(02)2632-1580-1/전송2632-1588

문서번호 금사 제15-146호

시행일자 2015년 09월 07일 (년)

받 음 전 조합원사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공동사업추천제도 활용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구매관련 공동구매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중에 별첨과 같이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수주활동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별첨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공동사업천제도 활용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 별첨자료는 우리 조합홈페이지 (www.kmtic.or.kr) 공지사항 156번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호 석





중 소 기 업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공동사업 추천제도' 활용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제도준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2015.5)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제조소기업 등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조합추천을 통해 해당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간의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요청을 전제로 함).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협업 ②공동상표 ③특허권 활용 ④공통애로기술개발 ⑤단체표준

3.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하시어 향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판로과(042-481-891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 소 기 업

수신자 01.국가기관, 02.광역자치단체, 03.시도교육청, 04.은행, 05.준정부기관, 06.기타공공기관, 07.지방공기업, 08.특별법인

행정사무관 이하녕

공공구매판로 전결 2015. 9. 2.
과장 장대교

협조자

시행 공공구매판로과-2855 (2015. 9. 2.)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http://www.smba.go.kr>

전화번호 042-481-8919 팩스번호 042-472-7932 / 5456@smba.go.kr / 대국민 공개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1357.go.kr), 전화상담은 ☎1357

‘중·소기업자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안내

□ 제도개요

구분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법적 근거	○ 「판로지원법」 제7조의2 (‘13.11.29 시행)	○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13.5.6 시행)
이행	○ 임의조항 · “~체결할 수 있다”	○ 강제조항 · “~체결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 <u>중소기업</u> 청장이 정하는 품목 * 경비, 청소용역, 타월, 배전함 등 26개 품목 * 다만,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 제품 전체(‘15.5.28~’)	○ <u>중소기업</u> 외 <u>(비경쟁제품)</u>
금액 제한	없음	기재부 고시금액(2.1억) 미만
구매 방식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u>1억원 미만</u>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u>1억원 이상~2.1억원 미만</u>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조합 참여	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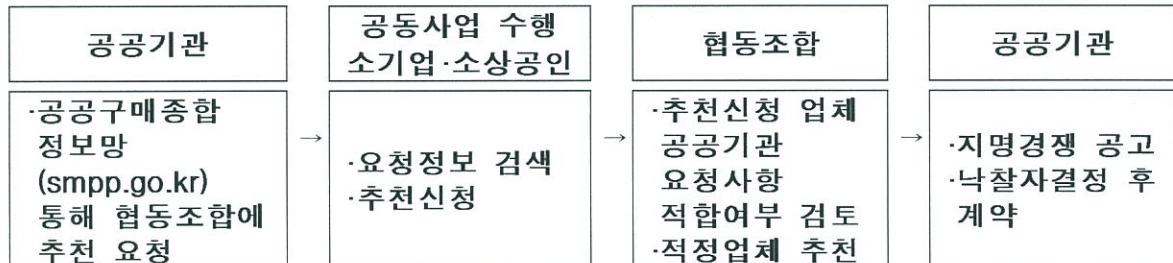
☞ 공동사업 수행으로, 협동조합-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 판로지원법 주요 개정사항

-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관련법령 개정
 - (기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8조의4
(변경) ‘판로지원법’ 제7조의2로 수정·이관(‘15.5.28 시행)’
 -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중기간 경쟁제품 중 26개→중기간 경쟁제품 207개 전체)
- ‘공동사업’에 ‘단체표준’ 추가(‘15.5.4,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개정)
 - * 공동사업 : ①협업, ②공동상표, ③특허권, ④공통애로기술개발, ⑤단체 표준

□ 제도활용 방법

- 대상제품 및 계약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금액제한 없음)
 - 기타 제품(기재부 고시금액 2.1억 미만)
- 활용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통한 추천방법 붙임의 매뉴얼 참조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